

# 와이즈유(영산대학교) 총장 프로필

- 성명: **부구욱**(夫龜旭, Bu Gu-wuck)
- 생년월일: 1952. 03. 03.
- 주소: 50510 경남 양산시 주남로 288
- 내선전화: 055-386-9100(팩스: 055-380-9109)



## ■ 학력

1959.03. ~ 1964.02.	부산 초량초등학교 졸업
1964.03. ~ 1967.02.	부산중학교 졸업
1967.03. ~ 1970.0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0.03. ~ 1974.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4.03. ~ 1979.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민사법 전공)
1979.09. ~ 1981.08.	사법연수원 수료(연수원 11기)
2001.02.	한양대학교 명예법학박사

## ■ 경력

1981.09.01. ~ 1984.08.31.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4.09.01. ~ 1986.04.30.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1986.05.01. ~ 1989.02.28.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9.03.01. ~ 1991.02.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1.02.11. ~ 1991.09.15.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1.09.16. ~ 1994.02.28.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4.03.01. ~ 1997.02.26.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5.03.01. ~ 1997.02.26.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6.11. ~ 1997.02.26.	서울지방법원 부장 직무대리
1997.02.27. ~ 1998.08.03.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8.09.01. ~ 2000.02.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2000.02.18. ~ 2001.02.12.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02.15. ~ 2005.02.14.	제2대 영산대학교 총장
2005.09.01. ~ 2007.08.31.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 위원

2005.02.15. ~ 2009.02.14.	제3대 영산대학교 총장
2008.07.01. ~ 2014.05.29.	부산국제영화제(BIFF) 후원회장
2008.10.27. ~ 2011.08.31.	부산관광컨벤션 포럼 이사장
2009.02.15. ~ 2013.02.14.	제4대 영산대학교 총장
2009.07.01.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로스쿨대책위원회 위원장
2009.09.30. ~ 2016.02.17.	한국조정학회 회장
2010.09.01. ~ 2013.02.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
2011.12.06. ~ 2018.12.6.	한국대학총장협회 제9대 회장
2013.02.15. ~ 2017.02.14.	제5대 영산대학교 총장
2013.02.18. ~ 2015.01.1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2014.04.07. ~ 2015.01.15.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17대 회장
2015.01.16. ~ 2016.04.0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1대 회장
2016.03.03. ~ 2018.03.02.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2017.02.15. ~ 2021.02.14.	제6대 영산대학교 총장
2018.01.01. ~ 현재	서울대학교 부산총동창회 회장
2021.04.19. ~ 현재	제7대 영산대학교 총장

## ■ 수상

제16회 부산문화대상 사회공헌부문(2015)

세계부부의날위원회 올해의부부대상(2020)

## ■ 연구실적

01. 會社支配權 讓渡에 관한 美國法 小考. (1979. 2)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02. 約束어음 公正證書에 관한 諸問題. 裁判資料 31輯 (1986. 7) 559면.
03. 少年法 12條에 따른 保護事件審理事例. 法律新聞 2053號 (1991. 8) 12면.
04. 被擔保債權이 도박자금 대여채권인 경우, 根抵當權 設定 登記의 抹消를 명하는 것  
이 민법 제746조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2號 (1995. 5) 201면.
05. 當事者一方이 死亡한 경우의 事實婚存在確認請求. 대법원판례해설 23號 (1995. 12) 315면.
06. 當事者一方이 死亡한 境遇의 事實婚關係存否確認請求. 法曹 45卷 3號 (474號) (1996. 3) 137면.
07. 民事訴訟法 제633조 제1호에서 規定한 "執行을 繼行할 수 없을 때"의 意味. 法  
曹 45卷 6號 (477號) (1996. 6) 154면.

08. 防禦費用과 損害防止費用의 認定範圍. 商事判例研究 第2卷 保險法, 海商法 (1996. 11. 30) 206면.
09. 商法 제720조와 제680조의 防禦費用과 損害防止費用의 認定範圍. 法曹 46卷 1號 (484號) (1997. 1) 202면.
10. 默示的 承認事實의 存否에 관한 判斷基準. 法曹 46卷12號 (495號) (1997. 12) 123면.
11. 賃借土地를 벗어난 賃借人 소유 建物部分에 대한 買受請求權 行使의 效果. 法曹 48卷 9號 (1999. 9) 204면.
12. 販促物에 의한 商標權의 侵害問題. 司法論集 30輯 (1999. 12) 593면. 끝.